

2025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



성 북 구
(복지정책과)

2025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

의안 번호	35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. 11.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필요성

- 성북복지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재산 지원 필요
- 성북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, 복지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복지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역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상승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 필요

나.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(재정지원)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2. 출연기관

- 출연대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2025. 4. 예정
 - 설립근거 : 「민법」 제32조 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)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위 치 : 성북구 정릉로48길 35
 - 조직구성 : 이사회, 감사, 사무국(1국 3팀)
- 주요사업
 -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구현 : 주민복지 아카데미,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,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

- 지역상생 기부나눔문화 활성화 : 성북형 사회복지 민간기금 조성 등
- 지역복지 인프라 개선 : 소규모 복지시설 기능개선, 사회복지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등
- 자원봉사활성화 : 자원봉사센터 운영,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지원 등

3. 출연금 산출내역

○ 출연금 현황 : **총 2,739,377천원**

- 기본재산 : 2,000,000천원
 - 설립시 1회 출연 (법인 설립 허가 요건)
- 보통재산 : 739,377천원

구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합계
금액	571,780	148,097	19,500	739,377

4. 기대효과

-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· 서비스 개발 · 전문성 향상 기대
- 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통한 지역복지 인프라 개선, 복지서비스 질 향상
- 민간자원 규모화 · 복지사각지대 해소

5. 참고사항 (관계법령)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(재정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